

금융 분쟁 사례

차량의 하자를 이유로 한 차량 리콜 가능 여부.

✓ 발생원인

- 운용리스 이용자가 차량의 하자를 이유로 차량 리콜을 요청함.

✓ 해결

- 고객님과 당사가 체결한 리스계약을 근거하여, 리스 차량의 선택 및 계약기간 내 유지·관리의 책임은 고객님께 있습니다. 다만, 이용하시는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경우 차량 제조사에게 보상 및 리콜에 대한 신청을 직접 해야 하며, 당사는 매도인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함으로써 손해배상 및 하자 담보청구권등 모든 권리를 고객에게 양도합니다.

✓ 리스 약관

- 제 8조(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) 제 1항, 제 2항

- ① 고객은 자동차 인수 시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, 고객 또는 고객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 받은 즉시 자동차에 대한 하자 유무를 검사하고 금융회사에 제 6조, 제 2항에 다른 방법으로 자동차 인수 사실을 확인해 주기로 합니다.

(제 6조, 제 2항 - 리스 기간은 고객이 이 약정서에 따라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하는 기간(이하 “리스기간”이라고 합니다)이며, 리스 실행 일은 고객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 합니다.)

- ② 고객이 제 1항의 자동차 인수 사실을 확인해준 경우 자동차를 인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.

- 제 9조(자동차의 인도 지연 또는 하자)

- ① 고객은 자동차의 인도 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.

- ② 제 1항의 경우 금융회사는 매도인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함으로써 매도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및 하자 담보청구권등 모든 권리를 고객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.

- ③ 고객은 제 8조에 따라 자동차 인수 사실을 확인해 준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달리 정당한 반증 사유가 없는 한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이행 책임을 집니다. 다만, 금융회사가 사전에 인도 지연 또는 하자 등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고객에게 리스료를 청구 할 수 없습니다.

- ④ 금융회사의 과실 없는 사유로 인도 지연 및 하자 발생의 경우 고객은 제 1항에 따로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 하기로 하며, 금융회사는 매도인의 과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인도 지연 또는 하자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고객이 지급한 리스료를 정산하기로 합니다. 다만, 정산 금액은 제세공과금, 보험료, 범칙금 등 금융회사가 지출한 비용으로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.